

50.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2년 9월 19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승대 혁신성장실장)

- 제안 이유
 -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22. 7월)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추진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추진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안 제4조 및 제4조의2)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제관)

□ 적법성 여부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검토사항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4조 및 제4조의 2에서는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추진협의회³⁴⁾(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강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더불어, 대구광역시에서는 민선8기 구조혁신의 일환으로 책임회 피성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 정비증*에 있으며, 본 협의회의 경우 자체계획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폐지하고자 함.

34)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추진협의회 년도별 개최실적

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개최실적(회)	1	1	1	0

* **위원회 정비현황** : 전체 199개 위원회 중 51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10개 위원회는 중앙부서에 법령 개정 건의 중에 있음.

특히, 폐지되는 위원회(51개)는

① 회의개최 실적 저조(11개) ② 역할종료 및 기능약화(16개)

③ 자체계획으로 기능 대체(18개) ④ 목적·기능 유사(6개) 에 따른 것임.

소관부서에서는 「대구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계획(매년 수립)」

수립 시 [사]메디시티대구협의회 내 의료관광 산업위원회에서 협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애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협의회** 폐지에 따라 업무추진 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협의회를 신설하거나 재구성 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해 당	없 음

5. 토론요지

- 해당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